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19가합101224(본소), 2019가합106038(반소) 판결
[공사대금 ·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현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혜

변 론 종 결 2021. 9.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28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6.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23.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작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선별, 파쇄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유한회사 C(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D)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유한회사 C는 2018. 1. 23. 피고에게 밀양울산 간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① 골재 및 샌드밀 생산 및 상차, ② 크랏샤 및 샌드플랜트1) 운영 및 관리 등을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피고 사이의 샌드플랜트 제작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8. 2. 5. 원고가 피고에게 1일 10시간 기준 500㎥의 모래를 생산할 수 있는 샌드플랜트를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계약금 지급 후 45일로 한다.

제3조(공사금액) 952,000,000원(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공사대금지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15회로 지불기로 한다.

1. 계약금: 공사계약과 동시에 100,000,000원을 지불한다.
2. 중도금: 공사현장에 기계 납품시(현장도착)에 100,000,000원을 지불한다.
3. 중도금: 시운전 완료 후 공사금액의 일부 100,000,000원을 지불한다.
4. 잔 금: 샌드플랜트 납품금 잔액 685,000,000원은 12개월 1/N으로 분납하고 분납기일은 해당 월말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전까지 납부한다(계약금 및 중도금은 제외한다).

제12조(기타사항)

2.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본 공사 시설물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라. 이 사건 제작계약에 기한 일부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8. 2. 6. 위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10,000,000원을, 2018. 5. 1.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8. 7. 23. 위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000,000원을, 2018. 9. 6.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샌드플랜트 제작 완공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샌드플랜트를 납품하였고, 2018. 6. 1. 샌드플랜트의 인수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

피고와 유한회사 C는 2018. 8. 2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계약 내용: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크라샤 현장의 샌드플랜트 및 전체장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 830,000,000원

4. 샌드플랜트 할부금(원고)의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는 유한회사 C에서 정리하며, 추가금액은 피고에서 즉시 정리한다(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는 원고와 유한회사 C가 재계약하는 것으로 피고가 협조한다).

8. 위 제1항의 매매대금 중 유한회사 C는 2018. 8. 23.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영수하였으며, 유한회사 C는 피고에게 잔금 730,000,000원을 2018. 8. 31.

100,000,000원, 2018. 9. 30. 126,000,000원, 2018. 10. 31. 126,000,000원, 2018. 11. 30. 126,000,000원, 2018. 12. 31.

126,000,000원, 2019. 1. 31. 126,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사. 유한회사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골재생산 계약

유한회사 C와 주식회사 E은 2019. 3.경 주식회사 E이 피고가 수행하던 골재생산 등을 맡는 내용의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샌드플랜트 유지관리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E은 2019. 3.경 샌드플랜트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8,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이 정한 샌드플랜트의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8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이 사건 제작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제되거나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대금조로 받은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

1) [하자로 인한 해제]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1일 생산용량이 500㎥인 샌드플랜트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하여 공급한 샌드플랜트의 1일 생산용량은 200㎥에 불과하다.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이다.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은 해제되었다.

2) 이 사건 공사타절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유한회사 C가 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원고는 2년여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은 위 공사타절서 작성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피고는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

3) 이 사건 제작계약은 계속적 계약인데, 원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은 종료되었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샌드플랜트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20,000,000원3) 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763,500,000원[= 1,08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제작계약 해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과정에서도 피고 주장의 하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을 제3, 6호증만으로는 샌드플랜트에 피고 주장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작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합의는 원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닌 점, ② 원고는 위 타절합의 이후인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의 잔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이 있었고,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잔금을 유한회사 C가 지급하기로 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작계약의 해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해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뢰관계 파괴에 따른 이 사건 제작계약의 종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이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원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니 이 사건 제작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속적 계약은 일정한 시간 동안 급부가 계속되어 공급되는 계약을 말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작계약은 샌드플랜트의 제작설치를 급부로 하는 것으로 계속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시운전 미완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샌드플랜트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 제5조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타절과정에서도 시운전 미완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샌드플랜트의 시운전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유한회사 C에 의한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C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주식회사 E을 통해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31.부터 2020. 7. 1.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약 8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샌드플랜트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제3자의 변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하여

가) 지체상금

피고는, 샌드플랜트의 제작이 이 사건 제작계약이 정한 기한을 넘겨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지체상금이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작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인 사실, 이 사건 제작계약의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이 2018. 2. 6.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샌드플랜트의 최종 완공일이 2018. 6.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은 2018. 2. 6.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은 2018. 3. 22.이다. 따라서 그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샌드플랜트의 최종 완공일인 2018. 6. 1.까지의 기간인 71일 동안 매일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209,805,000원⁴⁾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2차 중도금의 지급이 늦어진 동안의 기간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전체 공사대금에서 중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 불과한 점,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1, 2차 중도금을 선급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1, 2차 중도금 지급의 지연을 이유로 일의 착수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샌드플랜트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샌드플랜트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타절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 역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샌드플랜트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피고는, 샌드플랜트의 점유이전 내지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샌드플랜트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인수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그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작계약 제12항 제2호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본 공사 시설물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인데,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샌드플랜트의 점유를 이전해 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피고가 샌드플랜트의 점유이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어떤 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원고가 미이행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행불능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샌드플랜트의 감가상각 및 원고의 점유를 통한 부당이득액

피고는, 샌드플랜트의 감가상각된 액수가 공제되어야 하거나 원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샌드플랜트를 점유하면서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유한회사 C와의 타결계약을 통해 샌드플랜트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유한회사 C가 샌드플랜트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샌드플랜트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가사 원고는 샌드플랜트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용으로 인하여 샌드플랜트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관주의의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민법 제374조 참조),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예비적 항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샌드플랜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작계약과 같이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위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샌드플랜트에 관한 소유이전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1) 원고는 2차 중도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잔금 75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863,500,000원 전부에 관하여 샌드플랜트의 최종 완공일인 2018. 6.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2차 중도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9. 6. 지급되었다. 그때까지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594,520원⁵⁾이다. 미지급된 2차 중도금의 부가가치세 1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8. 6. 2.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3) 잔금에 관하여 본다. 샌드플랜트의 최종 완공일인 2018. 6. 1. 잔금지급의무는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2018. 6. 2.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야 한다⁶⁾.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5,289,520원(= 미지급 대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 합계 765,094,520원 - 지체상금 209,805,000원⁷⁾)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2018.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계약이 해제 내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박형민, 판사 문 혁

- 1) 샌드플랜트는 석산에서 채취된 원석 등을 분쇄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 2) 이 사건 반소장에는 아래 1항) 기재 해제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64751 판결), 피고가 다른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2)항 기재 이하의 사유도 판단하기로 한다.
- 3) 원고는 소장에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으나 2020. 7. 8.자 준비서면을 통해 2차 중도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도 지급받았음을 추가로 자인하였다.
- 4) = 985,000,000원(피고의 주장에 따른 금액이다) × 71일(2018. 3. 23. ~ 2018. 6. 1.) × 3/1,000
- 5) = 100,000,000원 × 97/365(2018. 6. 2. ~ 2018. 9. 6.) × 연 6%
- 6) 잔금 지급의무에 기한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항변하지 않았다.

7)민법 제479조에 따라 2차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총당한다.